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 정비 (안 제3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악취방지 및 부숙도 준수를 위한 장기폭기, 부유물 제거 등 최근 액비화 여건 변화를 기준에 반영

※ 근거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 중 “다만,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은 0.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”는 단서조항을 삭제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액비의 품질향상 및 이용처 확대 등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효과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준수를 위해 액비화 과정에서의 폭기(공기공급) 기간이 증가하여 질소 성분 휘산 증가

* 부숙 액비 46개 분석 결과 72%가 질소 최소함유량 기준(0.1%) 미달('20, 상지대학교)

- 연중 살포를 위해 관수시설 이용(시설원예, 골프장 등) 시 관 막힘 방지를 위한 부유물 제거과정에서 질소 성분도 함께 감소

* 액비의 골프장 활용 등을 위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정 건의('21. 제주도 등)

2. 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(안 제4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그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,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 축산업의 여건이 변화하였으나, 관련 내용 미 반영

※ 근거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, 제9조제6항, 제19조제1항

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축산법」 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 도입, 「가축분뇨법」 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“안전관리인증기준” 명칭 변경을 반영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 조문 현행화를 통한 행정 혼란 예방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